

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 공고 및 선거사무 추진일정 안내

1. 협회 정관 제21조의2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등 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선거사무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9. 28.

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



1. 선거명

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

2. 선거일시(예정)

2021. 1.14(목) ~ 1.15(금), 09시~18시

3. 선거장소(투표소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(<http://www.kvoting.go.kr>)

4. 선거권 자격(임원선거관리규정 제7조)

협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결격사유가 없어 선거인명부에 확정 등재된 모든 정회원

- 결격사유 :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정관 제50조, 제51조에 의한 회원 권리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사람

※ 회원이 정회원 월정회비를 6개월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받아 선거권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5. 피선거권 자격(정관 제9조)

협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당시 10년 이상의 협회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.

- 1)협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
- 2)건축사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
- 3)기관, 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가 인정한 사람

6. 선거인명부 공고(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안내)

- 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로 같음함.

1)기간 : 2020. 9.28 ~ 11.30

2)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: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ira.or.kr>)

※ 온라인투표를 위한 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)가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사무처로 연락바랍니다. (방법 등 홈페이지 게재)

7. 예비후보자 등록

1)등록기간 : 2020.11. 2(월) ~ 11. 6(금), 09:00 ~ 18:00

2)등록처 :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(협회 총무팀)
(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)

3)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
(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지참)

4)등록서류

①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서식)

②입후보 소견서(A4규격용지 단면 2매이내/아래아한글 바탕체, 크기 12p, 줄간격 160%)

③이력서(상훈포함/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(규격 35x45mm) 부착)

④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(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)

⑤서약서(별지서식)

⑥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별지서식)

⑦선거기탁금 : 1,500만원(회장선거 기탁금의 50%)

납입계좌 : 국민은행 484237-01-008375, 대한건축사협회

※ 납입한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후보자등을 사퇴 또는 후보자등의 귀책사유로 후보등록무효, 당선무효, 투표무효, 선거무효가 된 때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8. 특기사항(반드시 숙지 요망)

정관 제21조의2제5항 및 제6항과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
9. 선거운동

1)후보자등은 임원선거관리규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※ '후보자등'이라 함은 '예비후보자'와 '후보자'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
2)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일(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은 날)로부터 후보자등록 직전까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4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①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

②예비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영

③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

④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

3)후보자등과 그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, 선거운동원,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제3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됩니다.

10. 선거관리위원회

구 분	성 명	사 무 소 명
위 원 장	조 충 기	종합건축사사무소 간향
부위원장	조 성 원	(주)대우 건축사사무소
위 원	고 봉 규	삼성 건축사사무소
	김 향 년	(주)예창 건축사사무소
	신 우 식	(주)예가 건축사사무소
	심 상 봉	(주)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
	안 길 전	(주)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
	오 종 열	(주)디자인그룹금성 건축사사무소
	이 근 창	(주)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
	장 양 순	건축사사무소 창건축
	장 현 수	(주)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아키

※ 기타문의 :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장영인, 이재명
(02-3415-6830, 6814)

<붙임> 1)협회 제33대 회장선거 추진일정, 2)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(협회 홈페이지 게재), 3)각종 서식(협회 홈페이지 게재)